

제 262 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2.3.23.)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안 -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 승 주]

목 차

1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6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11
7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3
8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5
9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7
10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19
11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21
12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	23
13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25
14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27

거창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2021. 10. 19. 제정되어 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민의 조례청구권 보장을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함(안 제2조)
- 나. 조례의 제·개·폐 청구서, 대표자 증명서, 위임신고서, 위임신고증, 청구인 명부, 이의신청서 등 서식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0조)
- 다. 청구인명부의 내용 공표 및 열람 장소를 정함(안 제8조)
- 라.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단체장의 협조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등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과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필요 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존속기한 규정 삭제(제7조)
- 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규칙 제정의 근거 마련(제7조의2)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제65조·제6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특별위원회의 상시적 운영과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임시회 소집 및 의안 발의 정족수를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가. 소집에 관한 사항 추가에 따른 제명과 목적조항 개정
- 나. 조명변경 및 임시회 소집 정족수 반영(안 제3조)
 - 1) 조명변경 : “회기” → “회기 및 소집”
 - 2) 소집 정족수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다. 의안발의 정족수 반영 :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4조, 제76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소집에 관한 사항 추가에 따른 제명을 “거창군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임시회 소집 정족수를 반영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는 규정 추가, 의안 발의 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군의회 의원의 직무범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중 “직무”에 대한 조항 삭제(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상 용어의 정의 중 “직무”에 대한 조항 삭제로 군의회 의원의 직무범위 제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개정이유

- 가.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표결방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거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의안발의 정족수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9조)
- 나. 본회의 표결 시 기록표결로 가부결정사항 반영(안 제41조)
- 다.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규정 반영(안 제54조의2)
- 라.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및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을 위해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안 제56조의3~제56조의4)
- 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규정 반영(안 제56조의5)
- 바.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징계대상행위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안 제82조제5항)

- 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규정 신설(안 제85조 ~ 제88조)
- 아. 윤리심사의 요구 및 회부 관련규정 신설(안 제9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정비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회의 표결 시 기록표결로 가부결정사항 등의 표결방법 반영,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및 발언 규정 신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거창군의회회의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시 미리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주민조례청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 나. 위원회 개최의 통지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다. 심사대상의원 등에 대한 심문과 심사대상의원의 발언 및 해명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조~제5조)
- 라. 증명서류의 제출 및 의결사항 통보 사항을 정함(제6조~제7조)
- 마.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제척과 회피 규정을 정함(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공직자윤리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1. 3.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한,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 인사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사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나. 시험응시 서류 및 수수료, 응시자격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10조)
- 다. 시험위원 선정,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3조)
- 라. 신규임용시험 특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전직시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제18조)
- 마. 시험합격자등록 및 명부작성, 임용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1조)

사.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작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및 특별 승진 임용기준 등에 관한 사항(안 제22조~제25조)

아. 평정관련 가산점 부여에 관한 사항(안 제26조, 제27조)

자. 결원 보충 및 임기제공무원의 신규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제2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험 응시 및 합격자 등록,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 승진임용 등에 관한 인사절차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규칙과 관련한 조문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한,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근무상황부 비치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 나. 공무원 출장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다. 근무상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안 제6조)
- 라. 업무의 인계 및 서류보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한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한,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 및 심사(안 제3조, 제4조)
- 나. 소양교육 의무 및 현지활동 등(안 제5조, 제6조)
- 다. 보고서 제출 및 등록, 사후관리(안 제7조, 제8조)
- 라.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른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출, 접수, 심사, 채택 및 시상 등 제안 제도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제안제출, 접수 등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다.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11조)
- 라. 제안의 심사기준, 의견조회 및 채택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제14조)
- 마. 채택 제안의 시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제19조)
- 바. 채택 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제2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제안제도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필요한 기준 및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한 거창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직무대리의 순위(안 제2조, 제3조)
- 다. 직무대리자의 책임(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사무과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1.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1. 3.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으로 인해, 거창군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안 제2조, 제3조)
- 다. 중요사항의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및 전결사항의 효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거창군의회 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해, 거창군의회 공무원이 재직 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나. 공무원 의원면직 제한 사유 확인 및 위반자 문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
- 다. 인사위원회의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4조·제65조·제66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비위 공직자의 의원 면직 제한 및 위반자에 대한 문책사항을 규정하여 의원면직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거창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22. 3. 8.
- 나. 제출자 : 의회운영위원장
- 다. 회부일자 : 2022. 3. 11.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2021. 1. 12. 전부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의 임면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으로써 인한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에 관한 신청, 지급 심사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명예퇴직수당 신청, 심사,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8조)
- 나. 조기퇴직수당 신청, 심사,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3. 11~3. 1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거창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수당 대상 · 신청방법 · 심사기준 · 지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규칙과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